

『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4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4월 29일

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가족지원과장 이 장 호

나. 제안이유

-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 및 그 밖의 아동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,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,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 시설,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, 아동 건강증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정목적 및 책임의 명확성 규정
 -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 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시
 -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(안 제4조)
 -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(안 제5조)

- 공공이용시설의 반영내용 및 안전시스템, 건강증진 등
 - 공공이용시설의 반영내용 제시(안 제6조)
 - 아동 안전시스템, 건강증진 등(안 제7조 ~ 제8조)
-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, 위원에 관한 규정
 -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 ~ 제10조)
 - 위원회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해촉, 수당 등(안 제11조 ~ 제1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조례안은

-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,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,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,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, 안 제5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아동관련 시설, 안전시스템, 건강증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아동복지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와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